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8
----------	-----

2019년 3월 6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30일, 권순선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순선 의원)

### 1. 제안이유

○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1.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2. 교육력 제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필요

한 때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3.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5조).
4.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대상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
6. 교육감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권순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58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 조례안은 관련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1)

특히 동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안 제 2조)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교육결과에의 평등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제31조와2) 「교육기본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1) 다만 동 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격차, 지역 간 교육불균형 등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음.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17.12)에서는 교육격차를 “타고난 성별, 인종, 능력 등과 같은 유전적 요소와 가정, 지역, 사회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가 다른 학생이 학교경험을 통해 드러낸 교육결과에 차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계층, 인종 등과 관련이 있으면서 사회 진출 후 받게 될 보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한 정의는 교육이 교육투입(학교시설, 학원가 형성, 가계소득 등),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개별학생의 능력 등), 교육결과(학업성취의 차이, 상급학교 진학의 차이 등) 등에 있어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개별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임.

2)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불균형 해소 사업]3)

(단위: 천원)

세부사업	포함내역	2018 최종예산	2019 본예산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 녀교육지원		6,205,758	5,626,131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교육복지지원활성화 꿈사다리장학제도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운영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지 원사업 학교협동조합지원 혁신교육지구운영	51,898,256	52,883,083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22,743,328	20,508,782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수익자부담경비 학비지원	36,445,702	30,217,521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4,144,777	3,872,797
학교평등예산		4,100,000	4,300,000
합계		125,537,821	117,408,314

따라서 동 조례안이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통한 교육의 균형 있  
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과 「교육기본법」 을 비롯  
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4)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한

3) 넓은 의미에서 체육관 설치, 학생식당 설치, 운동장 개선, 화장실 개선 등의 시설사업비도 교육여건 개  
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교육격차 해소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사업비는 제외하였음.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크게는 총칙규정(안 제1조~제3조),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과 지원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구성체계와 각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또는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의 지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안실무와 법령입안·심사기준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동 조례안의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제6조의 경우 교육감에게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사업의 지정 그리고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발전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 제8조의 조명이 안 제7조와 중복되는바, 이를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일한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0, 2019.2.14.)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 중복되는 조명을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8
----------	-----------

제안연월일 : 2019년 3월 6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 I. 수정이유

- 중복되는 조명을 수정함.

## II. 주요내용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조명 중 “설치 및 기능”을 “구성”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u>설치 및 기능</u>)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li> <li>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li> <li>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u>구성</u>)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7. (원안과 같음)</li> </ol>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